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3367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1. A
2. B
검 사 박대한(기소), 남연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송민석, 김선희(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정동식(피고인 B를 위하여)
판 결 선 고 2025. 5. 22.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피고인 B)]

피고인 B는 2024. 6.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4.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21. 5.경부터 대구 동구 C, 3층에서 가공식품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 피고인 B는 그 무렵 피고인 A의 제안에 따라 부산 부산진구 E, 3층에서 주식회사 D의 부산센터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사기

가. 피고인들의 주식회사 D 부산센터를 통한 범행

피고인들은 2021. 5.경부터 2021. 8.경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D 본사 및 부산센터에서 개최된 투자설명회, 주식회사 D의 인터넷 네이버 F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G, H, I 등 다수인들을 상대로 '유황닭, 유황계란, 유황돼지 등은 국민 먹거리이고 전 국민이 안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수요가 막대하고, 15년 된 뿌리있는 J에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다. J에 600만 원을 투자하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10만 원씩, 360만 원을 투자하면 매일 6만 원씩 투자금 대비 300%까지 수당이 지급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D은 대구 서구에 있는 유황닭 등 제품 생산, 판매 업체인 주식회사 J와 구분되는 별개의 법인으로서, 피고인 A은 당시 주식회사 J의 실질적 대표자인 K과 동업 계약이 종료되어 더 이상 주식회사 J와는 관련이 없었고, 주식회사 D에서 자체적으로 유황닭 등 제품을 생산, 제조하거나 주식회사 J로부터 유황닭 등 제품을 납입 받더라도 이를 유통할 만한 시설이나 능력이 전혀 없었으며, 피해자들을 비롯한 투자자들의 투자금 이외에 별도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수단이나 방법이 없어 사실상 다단계 마케팅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하여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수신한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식으로 운용하였으므로, 신규 투자자가 유입되지 않는 이상 투자자들에게 원금을 보장 및 수익을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투자자인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21. 5. 31.경부터 2021. 8.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65,2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A의 그 이외에 주식회사 D 인천센터 등을 통한 범행

피고인 A은 2021. 5.경부터 2021. 8.경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D 본사 및 인천센터 등 지역센터에서 개최된 투자설명회, 주식회사 D의 인터넷 네이버 F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L, M, N, O, P, Q 등 다수인들을 상대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거짓말하였다.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인천센터 등 지역센터 운영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투자자인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21. 7. 30.경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97,2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인천센터 등 지역센터 운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들의 주식회사 D 부산센터를 통한 범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한 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설명 및 홍보를 진행하여, 2021. 5. 31.경부터 2021. 8.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65,2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A의 그 이외에 주식회사 D 인천센터 등을 통한 범행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인천센터 등 지역센터 운영자들과 공모하여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한 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설명 및 홍보를 진행하여, 2021. 7. 30.경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97,200,000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인천센터 등 지역센터 운영자들과 공모하여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G, H, L, Q, K, R, A, B의 각 법정진술
1. I, S, Q, L,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H의 각 진술서



1. 각 투자 설명자료 각 1부, J F 사진 각 1부, 피의자 B가 피해자들에게 전송한 투자 설명자료 등 각 1부
1. 각 피해금 송금자료 각 1부(증거목록 순번 5, 53, 94, 101, 116)
1. 수사보고(R 전화통화)
1. 수사보고(고소인이 작성한 피고소인의 사무실 요도 첨부), 피의자 A 운영 사무실 약도 1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투자설명회 강연사진 첨부), 피의자 A 투자설명 사진 1부
1. 수사보고서[고소인 I이 제출한 (주)D F 캡처사진 첨부], J F 사진 각 1부, 수사보고서[(주)D 런칭 관련 F 캡처사진], J F 사진 각 1부, 수사보고서(고소인 G가 자필 작성한 J 코드 가입내역 첨부), J 코드 가입내역 1부, 수사보고서(B가 고소인 G에게 전송한 J 수당지급 플랫폼), 피의자 B가 피해자 G에게 전송한 투자설명자료 등 각 1부, 수사보고서(G와 B가 주고받은 카톡 대화내용 캡처사진 첨부), 피의자 B와 피해자 G 간 카카오톡 대화내역 사진 각 1부, 수사보고서(고소인 G가 제출한 J 코인 관련 자료), J 앱 사진 등 각 1부, 피해자 Q와 L 부장 간 카카오톡 대화내역 사진 각 1부, 피의자 B와 피해자 G, I 간 카카오톡 대화내역 사진 각 1부
1. 수사보고서[J(U) 앱에서 확인되는 고소인 I의 투자내역], J 앱 피해자 I 투자내역 사진 1부, 수사보고서[J(U) 앱에서 확인되는 고소인 G의 투자내역], 피해금 송금자료 각 1부, J 앱 피해자 G 투자내역 사진 각 1부, 수사보고서(고소인 I의 투자금 입금내역 및 수당 지급내역), 피해자 I 투자금 송금 및 수당 지급내역 자료 각 1부, 수사보고서(고소인 H의 투자금 입금내역 및 수당 지급내역), 피해자 H 투자금 송금 및 수당 지급내역 자료 각 1부, 피해자 H 등 수당 지급내역 각 1부



1. 수사보고서(범행에 이용된 계좌 특정), 수사보고서(압수수색영장회신-피의자 A 명의 우체국계좌 거래내역 첨부), 피의자 A 명의 우체국계좌 거래내역 1부, 수사보고서(압수수색영장회신-피의자 A 명의 V계좌 거래내역 첨부), 피의자 A 명의 V계좌 거래내역 1부, 수사보고서(압수수색영장회신-피의자 B 명의 W은행 거래내역 첨부), 피의자 B 명의 W은행계좌 거래내역 1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명의 우체국계좌 거래내역 분석결과), 투자금 수신내역 등 각 1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명의 V계좌 거래내역 분석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B 명의 W은행계좌 거래내역 분석)

1. 수사보고서(고소인 I이 제출한 2021. 8. 4. 녹취파일 확인결과), 수사보고서(고소인 I이 제출한 2021. 8. 23. 녹취파일 확인결과), 수사보고서(고소인 I이 제출한 2021. 10. 14. 녹취파일 확인결과), 수사보고서(고소인 I이 제출한 2021. 10. 18. 녹취파일 확인결과)

1. 수사보고서[(주)J 및 (주)D에 대한 금융감독원 제조권 금융회사 조회], 금융감독원 제조권 금융회사 조회 각 1부

1. 수사보고서(J→D 매출내역 확인), J D 매출자료 1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B), 부산지방법원 2024고단1295호 판결문, 사건요약 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범죄사실 1의 가항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2의 가항 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사기죄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 관한법률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죄(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4~11항 부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① 실제로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의 유황닭 등 상품으로 사업을 하려고 했고 그 상품의 판매 및 유통 등의 진행된 내용이 있으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가 인정될 수 없어 사기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②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거나 이를 보장하지 않았으므로, 유사수신행위도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와 그 변호인은, '피고인 B가 피고인 A과 공모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고인 A에게 속았으며, 피고인 A으로부터 소개받은 유향닭 등의 상품을 피해자들에게 소개하였을 뿐이므로, 사기 범죄 및 유사수신 범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재물을 받는 자에게는 신의 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6도1081 판결,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 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1718 판결 등 참조).

2) 또한,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의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공동실행할 의사가 있는 공범자 상



호간에 직·간접적으로 그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충분하고, 이에 대한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등 참조).

3) 한편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유사수신행위법'이라 한다) 제3조는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면서 제2조 제1호에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상품거래의 형식을 띠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품의 거래를 가장하거나 빙자한 것일 뿐 사실상 금전의 거래라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이를 위 법이 금하는 유사수신행위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075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들에 대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3명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투자금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기망하여 그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5,2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피고인 A은 인천지역의 센터 운영자들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6명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그 투자금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기망하여 그 피해자



들로부터 합계 97,2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들은 당시 적어도 피해자들에게 각 투자금 이상의 수익을 주지 못할 수 있다는 인식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편취 범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위 투자금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되고,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㉔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는 2012. 3. 12. 닭고기 양념육 등 및 식자재의 제조와 도·소매업, 양계(유황먹인닭)업 등을 주된 사업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유황닭 등의 제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영업을 하고 있고, K이 J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㉕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2016. 3. 30. 가공식품 도·소매업, 프랜차이즈사업 등을 주된 사업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며, 피고인 A이 2021. 5. 경부터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2021. 8. 4. 그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 ㉖ 피고인 B는 2021. 5.경 무렵 피고인 A이 하는 사업에 참여하기로 하고 D의 부산센터를 운영하였다.

② ㉗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의 각 돈을 투자한 경위와 관련하여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대체로 동일하게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즉,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피해자들(G, I, H, 이하 '부산 피해자들'이라 한다)은 '피고인들로부터 「J의 유황닭 등 제품이 우수하고 사업성이 좋아서 투자를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3,600,000원을 투자하면 주 5회에 걸쳐 매일 60,000원씩의, 6,000,000원을 투자하면 주 5회 동안 매일 100,000원씩의 수당이 나온다. 투자금 대비 300%까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는 설명을 듣고 투자를 하였으나, 그 약속대로 수당이 지급되거나 수익을 얻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피해자



들(L, Q, M, N, O, P, 이하 '인천 피해자들'이라 한다)은 먼저 투자를 하였던 '상위 투자자'로부터 「J에 투자를 하면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10,080,000원을 투자하면 매월 3,000,000원을 받는다. 수익률이 200% 정도 된다」는 말을 듣고 투자를 하였지만, 그에 따른 수당이나 수익을 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㉞ 그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다른 증거들, 특히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설명 또는 제시한 투자 자료에서 확인되는 내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들의 위 진술은 믿을 수 있고, 범행을 부인하는 피고인들의 진술이나 주장만으로 이를 배척할 수 없다.

③ ㉞ 피고인 A은 투자금에 대한 수당이나 수익금의 발생과 지급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여 관련 자료 등을 만들고, 이를 투자설명회 등을 통해 직접 투자자들에게 설명 및 홍보하거나 또는 피고인 B 등과 같이 투자자를 모집하는 지역 센터의 운영자들에게 알리고 전달하였다. ㉞ 피고인 B가 부산 피해자들에게 제시하거나 설명한 투자설명자료에는 '3,600,000원 투자시 300%인 10,080,000원까지, 7,200,000원 투자시 300%인 21,600,000원까지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 포인트 지급이 300%까지 될 수 있다는 내용, 6,000,000원에 대해 주에 500,000원씩(매일 100,000원) 계속 10,080,000원까지 받아가고, 1명 소개할 때마다 소개수당 1,200,000원, 작은 그룹에 1명 들어올 때마다 600,000원씩 후원수당을 받는다는 내용'이 확인된다(증거기록 10, 31~33, 415~424쪽). ㉞ 부산 피해자들이 이 사건 투자와 관련하여 가입한 J 앱에서 '투자실적 3,000,000원에 대해 총 보상한도액이 9,000,000원, 투자실적 5,000,000원에 대해 총 보상한도액이 15,000,000원, 투자실적 6,000,000원에 대해 총 보상한도액이 18,000,000원, 투자실적 18,000,000원에 대해 총 보상한도액이 54,000,000원 등으로 해당 보상한도액이 투자실적 대비 300%의 금액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이 확인된다(증거



기록 149~173, 373~411쪽). ㉔ 인천 피해자들이 이 사건 투자를 소개받은 상위 투자자들로부터 전달받은 투자 설명자료에는 '투자금액에 따라 인정되는 PV(예를 들면, 투자금액 3,600,000원은 3,000,000PV, 투자금액 7,200,000원은 6,000,000PV 등) 대비 300%까지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확인되고(증거기록 722, 820쪽), 위 투자 설명자료는 피고인 A이 수사과정에서 제출한 판권 마케팅 자료와 동일하다(증거기록 1197쪽). ㉕ 인천 피해자들이 이 사건 투자와 관련하여 가입한 J 앱에서 '투자실적 6,000,000원에 대해 총 보상한도액이 18,000,000원으로 해당 보상한도액이 투자실적 대비 300%의 금액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이 확인된다(증거기록 733~739쪽).

④ ㉖ 피고인 A이 D을 운영하고, 피고인 B가 D의 부산 센터를 운영한 것은 앞서 보았다. ㉗ 피고인 B는 이 사건 투자자를 모집하고, 피고인 A이 부산 센터에서 투자설명회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장소를 제공하였다. ㉘ 피고인 B는 부산 피해자 G에게 직접 이 사건 투자를 제안하여 G가 투자를 하도록 하였고, G가 소개한 부산 피해자 I과 I이 소개한 H도 직접 만나서 수당의 지급기준과 금액 등 이 사건 투자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거나 안내하였다(증인 G, I, H의 각 법정진술 등). ㉙ 피고인 B는 부산 피해자들을 포함하여 여러 투자자들로부터 직접 투자금을 받기도 하고, 일부 투자자들이 요청하는 수당의 출금도 해주기도 하였다. 피고인 B가 본인의 예금계좌를 통해 여러 투자자들로부터 직접 지급받은 투자금은 총 200,000,000원이 넘고, 투자자들에게 직접 지급한 수당은 합계 140,000,000원이 넘는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651~674, 710~716쪽,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B는 부산 피해자들에게 개인적으로 시상금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㉚ 부산 피해자들은 피고인들로부터 제안받은 대로 투자금에 대한 수당 내지 수익을 받지 못하게 되자, 2021. 8.경~2021. 10.경 사이에 피고인 A뿐만 아니



라 피고인 B에게도 문제제기 및 책임추궁을 하였고, 그에 대하여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함께 부산 피해자들에게 '새롭게 발생하는 매출 등으로 투자 원금은 해결해줄 것이니 2021. 12.경까지 기다려 달라'는 등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237~307쪽). ㉮ 이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는 부산 피해자들을 포함하여 본인이 투자금의 모집이나 유치에 관여한 투자자들에 대하여는 본인의 역할에 따라 그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는 데에 필요한 부분을 담당함으로써 피고인 A와 함께 그 투자자들 또는 해당 투자금을 모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⑤ ㉮ D 또는 피고인 A은 J가 생산하는 유황닭 등의 제품을 매입하여 피해자들을 포함한 투자자들에게 판매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포함하여 투자자들로부터 모집한 투자금은 적어도 1,000,000,000원이 넘고, 그 중 투자자들에게 현금 수당으로 지급된 금액은 최소한 600,000,000원 넘는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571~716쪽). ㉮ 반면 피고인 A이 밝히는 바에 의하더라도 위 1,000,000,000원 중 피고인들이 유황닭 등의 제품 매입 및 판매 등에 사용된 금액은 그 10%에도 많이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651~674, 1259~1273, 2025. 2. 10.자 변론요지서 첨부 거래명세표 등).

⑥ ㉮ 위에서 살펴본 여러 사정들, 특히 위 ②, ③, ⑤항의 각 사정들로 미루어 보면, 피해자들은 각 해당 투자금에 대하여 최대 200~300%에 이르는 현금 수당이나 수익을 얻기 위하여 투자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투자 거래의 경우 통상 투자자는 투자 기간과 수익의 정도, 손해를 볼 수 있는지 여부와 같은 투자 대상의 가치, 투자 조건과 원금의 손실 위험성 등의 사항을 상당히 중요하게 고려한다고 보아야 하다. 그러므로 투자를 유치하거나 권유하는 당사자는 투자를 하려고하는 상대방에게 투자



대상의 가치나 투자 조건, 원금의 손실 위험성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은 사실대로 고지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포함한 투자자들에게 투자 수익의 지급기준과 방식, 즉 유황닭 등의 제품 판매보다는 새로운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이전의 투자자들에 대한 현금 수당을 지급한다는 점과 원금 손실의 위험성 등을 제대로 설명하거나 고지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⑦ 한편, 피고인 A은, '당시 피고인 A이나 D이 J의 유황닭 등 제품을 제조 및 유통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고, 실제로 위 제품의 판매를 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 B는, '본인 역시 투자자의 한 사람으로 피고인 A에게 속은 피해자이다'는 취지로 각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 피고인 A이나 D이 J의 유황닭 등의 제품을 판매하는 영업이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살펴본 것처럼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총 투자금 대비 유황닭 등의 제품 유통에 사용된 비용은 상당히 작은 부분인 반면 현금 수당으로 지급된 금액은 적어도 전체 투자금 대비 60%에 이르는 정도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점 등으로 보아 투자자들의 주요 투자 목적이나 취지는 투자 원금의 200~300%에 이르는 현금 수당을 받는 것에 있었다고 봄이 더 합리적이다. ㉢ 피고인 B도 피해자들처럼 투자자이기도 하나, 피고인 B는 위 ④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투자금을 유치하는 데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였으므로, 피고인 B가 투자자나 투자금의 모집에 관여한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피고인 A과 공동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위 각 주장은 그대로 믿을 수 없다.

⑧ ㉣ 당시 상황으로 볼 때, D이나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현금 수당을 문제없이 지급할 수 있을 정도로 자금을 보유하고 있거나 또는 그러한 수익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정도로 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㉔ 그리고 당시 피고인들은 상당한 규모의 새로운 투자자들 또는 투자금이 계속하여 모집되지 않으면,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현금 수당 등을 제대로 지급할 수 없다는 점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㉔ 그 밖에 달리 D 또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현금 수당 등의 지급을 이행할 수 있는 충분한 자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근거나 자료를 찾아보기 어렵다.

다. 피고인들에 대한 유사수신행위법위반죄의 성립 여부

앞서 살펴본 피해자들의 투자에 관한 구체적인 진행 경위와 그 관련 사정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D이나 피고인들이 유사수신행위에 관하여 인·허가를 받지 않은 점, 위 ②, ③항에서 본 것처럼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의 200~300%에 해당하는 현금 수당이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한 점, 위 ⑤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들의 총 투자금액 중 유황닭 등의 제품 유통에 사용된 비용은 채 10%에 미치지 못하는 작은 부분인 반면 현금 수당 등으로 지급된 금액은 60%에 이르는 정도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점 및 이에 비추어 피해자들의 투자 목적은 200~300%에 이르는 현금 수당을 받는 것에 있었다고 봄이 더 합리인 점, 실제로 현금 수당 등으로 투자금(원금)을 모두 회수한 투자자가 있는 점(증거기록 840~842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의 전액 또는 투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투자금을 받았고,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유황닭 등의 제품 유통은 상품의 거래를 빙자한 것에 불과하고 피해자들의 투자금은 사실상 금전의 거래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피해자들의 투자금과 관련한 유사수신행위법위반죄가 성립되므



로, 이와 다른 전제의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¹⁾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6년

나. 제2범죄(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 01. 유사수신행위법위반 > [제2유형] 조직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8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2년, 피고인 B 징역 10월

피고인 A은 9명의 피해자들(부산 피해자들 3명 + 인천 피해자들 6명)을 상대로 원금 대비 200~300%의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합계 260,000,000원이

1) 피고인 A에게 적용되는 것이고, 피고인 B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넘는 돈을 편취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함께 그 중 부산 피해자들 3명에 대하여 총 160,000,000원이 넘는 피해금액의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에 관여하였다. 유사수신행위는 시장경제질서를 왜곡하고 건전한 경제활동의 기초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으로 짧은 시간에 불특정의 여러 피해자들이 생기는 되는 등으로 악영향이 크므로 엄정한 관리와 대처가 필요한 점, 피고인 A은 이미 같은 사기, 유사수신행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일한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 B는 그 범행시기 등으로 보아 동종 유사수신행위로 수사를 받는 중에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수 및 전체 피해금액 등 피해규모가 작지 않으며, 범행시로부터 이미 많은 시간이 지난 점, 그럼에도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 A은 인천 피해자들 6명에게는 용서받지 못한 점, 쉽게 수궁할 수 없는 이유로 부인하면서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는 등으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보인 인식과 태도도 좋지 않아 보이는 점, 이에 비추어 피해자들은 재산상 손해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고통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내용 등으로 보아 피고인들의 죄가 무겁다.

다만 피해자들도 잘 알아보거나 검토해보지 않고 피고인들이 제시하는 것만 믿고 큰 수익을 얻으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점이 이 사건 피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범죄수익의 상당 부분이 각종 수당이나 포인트 등의 명목으로 투자자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아주 조금이나마 실제 제품의 거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투자거래 및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들로부터 현금 수당 등의 명목으로 합계 약 96,210,000원(부산 피해자들 3명 약 79,590,000원 + 인천 피해자들 6명 약 16,620,000원, 증거기록 1246~1258쪽)을 지급



받아 그 금액 상당의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부산 피해자들 3명에게 일정 금액(I 및 H에게 각 15,000,000원, G는 0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 피고인 A은 그 동안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각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유사수신행위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고, 그 각 범행 이전에 범죄전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 B는 투자자로서 본인의 투자금에 관하여 손실을 입기도 한 것으로 보이고, 사고 후유증으로 신체건강이 완전하지 못하다. 이와 같은 사정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관계와 지위, 구체적인 가담 정도 및 역할, 피고인들의 각 나이, 건강상태,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방법과 수단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살펴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하한의 범위를 벗어나서 피고인들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피고인 B에게는 부산 피해자들에게 추가적인 피해회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을 하지 않는다.

판사 김문성 _____



별지

범 죄 일 랫 표 (1)

순번	입금일시	피해자	입금액(원)	입금 은행	입금계좌 번호	입금계좌 명의자	수취 은행	수취 계좌번호	수취계좌 명의자	비고 (자금흐름)
1	2021-05-31	G	18,000,000	X은행	(계좌번호 1 생략)	Y	V	(계좌번호 2 생략)	A	
2	2021-06-16		28,800,000	X은행	(계좌번호 1 생략)	Y	우체국	(계좌번호 3 생략)	A	
3	2021-06-28		7,200,000	Z은행	(계좌번호 4 생략)	Y	W은행	(계좌번호 5 생략)	B	
4	2021-06-15	H	3,600,000	현금	현금	H	우체국	(계좌번호 3 생략)	A	
5	2021-06-17		3,600,000	현금	현금	H	우체국	(계좌번호 3 생략)	A	
6	2021-06-22		3,600,000	AA은행	(계좌번호 6 생략)	H	W은행	(계좌번호 5 생략)	B	
7	2021-07-12		1,400,000	현금	현금	H	W은행	(계좌번호 5 생략)	B	
8	2021-07-27		21,600,000	AA은행	(계좌번호 6 생략)	H	우체국	(계좌번호 3 생략)	A	
9	2021-08-12		7,200,000	AA은행	(계좌번호 6 생략)	H	우체국	(계좌번호 3 생략)	A	
10	2021-08-13		7,200,000	AA은행	(계좌번호 6 생략)	H	우체국	(계좌번호 3 생략)	A	
11	2021-08-25		21,600,000	AA은행	(계좌번호 6 생략)	H	우체국	(계좌번호 3 생략)	A	
12	2021-06-17	I	3,600,000	AB조합	(계좌번호 7 생략)	I	W은행	(계좌번호 5 생략)	B	
13	2021-06-22		10,800,000	AB조합	(계좌번호 7 생략)	I	우체국	(계좌번호 3 생략)	A	
14	2021-06-29		9,000,000	AB조합	(계좌번호 7 생략)	I	W은행	(계좌번호 5 생략)	B	
15	2021-07-27		9,000,000	AB조합	(계좌번호 7 생략)	I	우체국	(계좌번호 3 생략)	A	
16	2021-07-27		9,000,000	X은행	(계좌번호 8 생략)	I	우체국	(계좌번호 3 생략)	A	
합 계			165,200,00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1-15

별지

범 죄 일 랑 표 (2)

순번	입금일시	피해자	입금액(원)	입금 은행	입금계좌 번호	입금계좌 명의자	수취 은행	수취 계좌번호	수취계좌 명의자	비고 (자금 흐름)
1	2021-07-30	L	21,600,000	AC조합	(계좌번호 9 생략)	L	우체국	(계좌번호 3 생략)	A	L→AD→A
2	2021-07-30	M	21,600,000	AC조합	(계좌번호 10 생략)	M	우체국	(계좌번호 3 생략)	A	M→L→ AD→A
3	2021-07-30	N	21,600,000	AC조합	(계좌번호 11 생략)	N	우체국	(계좌번호 3 생략)	A	N→L→ AD→A
4	2021-07-30	O	7,200,000	기업은행	(계좌번호 12 생략)	O	우체국	(계좌번호 3 생략)	A	O→L→ AD→A
5	2021-07-30		3,600,000				우체국	(계좌번호 3 생략)	A	
6	2021-07-30	P	7,200,000	AC조합	(계좌번호 13 생략)	P	우체국	(계좌번호 3 생략)	A	P→L→ AD→A
7	2021-07-30		3,600,000				우체국	(계좌번호 3 생략)	A	
8	2021-07-30	Q	7,200,000	AE	(계좌번호 14 생략)	Q	우체국	(계좌번호 3 생략)	A	Q→ L→ AD→A
9	2021-07-30		3,600,000				우체국	(계좌번호 3 생략)	A	
합 계			97,200,000							